

방화 정책에 교묘히 편승하여 우회침투공작을 다변화하는 한편 위장된 평화통일 선전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통일 열기를 악용하여 자의적 대북접촉을 유도하는 등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대남방송 등 선전매체를 최대한 이용, 국내 좌익세력에게 투쟁이념과 활동지침을 제공해 주는 등 간접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동조하는 국내 좌익 세력들은 학원가·노동계·출판계·문화계·종교계 등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반국가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그들은 제1단계로 우리 사회 내부의 모든 반정부·반체제 세력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제2단계로 무장폭력혁명에 의하여 현 정부를 타도한 후 이른바 민중정권을 수립하며, 제3단계로 잔존하는 자본주의 요소를 제거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다음 연공·연북통일을 달성한다는 투쟁전략 하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또 소위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촉진투쟁을 정치사상전의 기본전술로 설정하여 사회혼란

의 극대화를 획책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적화방지 노력을 ‘반통일 음모’로 몰아세우고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매도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대고 있다. 그들은 이와 함께 현 정부를 친미매국세력, 반민주·반민중·반통일세력이라고 비방하는 한편, 팀스피리트훈련 반대, 칼기 폭파사건 조작설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 김일성을 ‘민족해방의 지도자’ 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위수동)’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에 공공연히 내걸기도 하였다.

운동권 학생들은 ‘가열찬 투쟁전개’ 등 북한식 말투를 이용, 각종 선전·선동 구호를 만들어 제창하고, 북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공연하기도 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평양축전의 노래’가 교내 축제의 공식노래로 채택되고, 교내 건물에 평양건물의 이름을 붙여 캠퍼스가 마치 평양시가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 흑색선전 방송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재한 주체사상 전단, 책자, 유인물 따위를 대량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의 전위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에 침투한 좌익세력들은 순수한 근로자들에게 소위 의식화 교육을 실시,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혁명의 투사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좌익세력은 또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법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면서 노동운동을 정치투쟁으로 전환하도록 선전·선동해 왔다.

이와 같이 북한 및 이에 동조하는 국내 좌익세력은 선량한 국민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끊임없이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심리전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들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하등 변함이 없으며 국내 좌익세력은 아직도 그 세력 확산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공산집단 및 이에 동조하는 국내 좌익세력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필요불가결한 법률이 아닐 수 없다.

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률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국가안보에 관한 형사법은 각 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법체계인 것이다.

미국은 공산세력의 직접적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전 제18편 형법 중에 간첩과 검열에 관한 조항(제37장 제792조 내지 제799조), 반역·내란 기타 국가전복 활동에 대한 일반조항(제115장 제2381조 내지 제2391조)을 두고 있는 외에 전복활동통제법(일명 1950년의 국내안전법, 미국법전 제50편 제23장 제781조 내지 제798조)과 공산주의자통제법(미국법전 제50편 제23장 제841조 내지 제844조)을 두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다. 서독,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도 모두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유지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공산집단과 국내 좌익세력

의 반국가활동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은 언젠가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법인 형법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한시적인 특별법 체계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참고로 북한의 공안관계법률 가운데 일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현재 시행중인 북한 형법은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었는데, 그들은 반혁명 적대분자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무기가 바로 형법이며, 그들의 통치자인 주석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고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옹호함으로써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기여하는 것이 형법의 근본사명이라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혁명범죄와 군사상의 범죄 등에 중점을 두어, 반혁명범죄를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에 반대하는 범죄, 소위 민족해방투쟁에 반대하는 범죄,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 등으로 세분하여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 북한 형법은 범죄행위가 있었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해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불신고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혁명범죄에 대한 불신고는 예외없이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강도죄,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개인재산강도죄에 대한 불신고를 처벌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 형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유추해석을 정면으로 허용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형법의 규정내용 및 기본원리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논의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2. 운용의 실상

가. 제6공화국의 기본 입장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인 북한공산집단 등 반국가단체와 그 추종세력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채택하는 전술은 시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의 활동양태 또한 천태만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천태만

상의 구체적 사상에서 공통점을 추출, 이를 일반화·유형화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형식이 일정 한도내에서 추상화되고 포괄적 내지 가치관계적 성향을 띠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법집행기관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일반화, 유형화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만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에 있어서도 공통된 현상이다.

예컨대 형법의 장물죄에서 장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 장물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법관이나 법학자들이 입법취지와 보호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제6공화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조문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즉, 정부는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제정 목적에 충실했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이 향유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왔던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된다는 주장을 폈다.

본래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고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 제한의 정도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 즉 전시나 평시나, 비상사태나 아니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될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눈 앞에 적이 없는 국가의 시각에서 그렇지 아니한 나라의 사정을 편향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대치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군사적·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안보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국내 좌익세력의 사상전과 심리전적 책동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국가보안법상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5항이다. 동법 제7조 제1항은 북한공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 동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89헌가 113호).

그러면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심으로 최근 사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언론·출판

■언론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이영희씨 구속,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이 신문사 기자 윤재걸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발부 등을 가리켜 일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조치들은 결코 언론자유의 탄압이 아니다.

이영희씨는 1989년 1월 초순경 이 신문사 이사 정태기

씨, 편집위원장 장윤환씨 등과 함께 북한지역 취재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1월 12일 일본에 전녀가 친북한 인사인 야스에 료오스케씨에게 북한방문 취재활동 및 김일성과의 인터뷰 주선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씨는 ‘존경하는 김일성주석 각하’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허락 받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서신을 전달하는 한편, 3월 5일 구체적인 입북일정을 논의하면서 입북 방법은 북한측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수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그의 편지에 썼던 바와 같이 당국에 사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정부를 배제하고 민중적 주체성에 입각, 북한 당국과 독자적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입북코자 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는 우리의 통일정책 수행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나 취재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또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혀 문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당시 서경원씨가 밀입북하여 찍은 사진 등을 이 신문사 기자 윤재걸씨가 서씨의 밀입북 사실을

취재하면서 서씨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경원 등 간첩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뿐 언론 탄압과는 전혀 무관하였다.

수사당국은 한겨레신문사에 대해 수차 수사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더욱이 수사당국은 대상이 언론사인 점을 감안, 압수·수색 장소를 한겨레신문사 편집국내 윤씨 등의 사용 책상과 자료실 등으로 특정하였다. 또 압수 대상도 해당 사진과 메모지 등으로 특정한 압수,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아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혹자는 법원의 영장발부 사실까지 비난한 일이 있으나,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 한겨레신문 기자 윤재걸씨가 서경원씨의 밀입북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치 않은 행위에 대해 기자의 취재원보호라는 직업윤리를 내세워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까닭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그것이 필

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제도 자체를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지하라는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취재원의 보호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출판

다음은 대학가와 사회 각계에 범람하고 있는 각종 이적 출판물을 그대로 방치해도 무방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88년 8월 29일 서울대 대학신문에 ‘유물변증법과 주체사상’이라는 글이 게재된 이후 대학가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그들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이 부쩍 늘어났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 1] 북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추동력은 수령의 지도사상—당의 유일적 지도—인민 대중의 유기적 결합에 있으므로 북한의 혁명과 건설에서의 지도사상은 바로 주체사상이며,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의 전반을 규정하는 사상

이다.……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정수를 계승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킨 것은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역학법칙을 발전시킨 것이나, 기독교가 유태교의 핵심을 유지하며 발전시킨 것과 비슷한 것이다.

——위 ‘유물변증법과 주체사상’

[예 2] 세계에서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이며, 세계 자본주의의 우두머리로서 식민지, 반식민지를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인 국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수인 미제가 남한을 군사적으로 강점한지도 어언 45년이 흘렀다.……6월 25일 확대된 한국전쟁은 미국이 북한제도를 붕괴시키고 인민공화국을 파괴하여 전 한국을 장악하기 위한 불의의 전쟁이었으며, 이 전쟁으로 대만의 장개석 군대를 조종하여 중국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한 반혁명 전쟁이었고, 고양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었다.……한반도 민중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미제의 불의의 침략에 항전하여 조국의 해방과 통일, 민주주의를 생취하고자 한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3월 조선대학교 ‘민주조선’ 창간호 중 ‘미제침략 백년사’



우리의 조국은 미국의 식민지, 그들의 노예가 아니라면 어찌 보고만 있을 것인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영봉에 횃불이 타오르고 망국적 5·10 단선을 반대하여 30만 도민 중 20만명이 참가, 미제의 각을 뜨다 적의 가슴 꽉에 불을 지르다 끝내 다 뜨지 못한 채 7만의 제주도 혁명 전사가 한 줌의 피묻은 뼈가루로 날아갔다.

— 위 ‘민주조선’ 창간호 중 ‘미군점령사’

그런데 대학가 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도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폭력혁명을 선전·선동하는 출판물이 잇달아 발간되었다. 최근 문제된 출판물 가운데 몇 가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 1] 1988년 11월 20일 백산서당에서 ‘민족자주화운동론’이라는 책자가 나왔다. 이 책은 주체사상에 입각,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제반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또 김일성을 수령이라 칭하면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고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 영도자이며,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참모부이므로, 인민대중은 수령—당과 결합됨으로써 진정한 사회 역사의 주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등 김일성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예 2] 1989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발행되어 온 월간 ‘노동해방문학’ 중 5월호에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 남과 북의 노동자는 만나야 한다’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자본가 계급의 노예 사슬에 묶여 있다고 개탄 가득한 주장을 펴면서, 특히 남한의 노동자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의 연대는 커녕 한 핏줄인 북한의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건설해 온 생산시설과 생명을 파괴시킬 무기생산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글은 또 남한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의 동지 이자 강력한 원군인 북한 노동자와 연대하여 민중통일운동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월간 '노동해방문학' 6,7월호는 박노해의 '비폭력 노선은 민중에 대한 테러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비폭력 노선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고 간디의 무저항·비폭력 노선은 부르조아 계급만을 위한 것이라고 매도하였다. 이 글은 또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이를 분쇄하고 노동해방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예 3] 1989년 7월 16일 노동계급사에서 발간한 '노동계급' 제2호는 사설 '노동자계급 전위당 건설에 부쳐', 특집 '현 정세의 특징과 노동운동의 과제' 등을 실었다. 이 글은 노

동자계급의 혁명적 전위당 결성이 시급하며 한 줌도 안되는 반동적 독점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인 국가권력의 차취와 탄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으로서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신문이나 출판물 뿐만 아니라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각종 유인물이 대학가, 노동현장 및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 1] 그러므로 동지들! 우리들은 즉각적으로 파쇼공화국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은 파쇼공화국의 무장력을 일거에 격파할 수 있는 4천만 민중의 총 무장봉기이다. 이것을 위해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따라서 노동자는 현재 내년 1월에 건설하고자 하는 전노협 건설 투쟁을 전국적 노동조합의 결집체 건설이라는 협소한 조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혁명적 노동자 단체와 개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총파업투쟁위원회 건설을 위해서 파쇼공화국 타도와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건설이라는 혁명의

깃발을 힘차게 내건 공세적인 정치적 총파업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현재 조직되어 있는 ‘정당방위대’ ‘선봉대’ ‘전사대’ 등을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를 가진 ‘혁명군대’로 재조직해 들어가자!

—— 1989년 11월 26일자 혁노맹 명의의 ‘혁명으로 전진! 또 전진!’

[예 2] 물론……노동관계법에 대해 잘 알아둠으로써 합법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의 무기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계급 전체, 나아가 모든 민중의 처지를 자각하는 데로 나아가야 하며, 이런 상태를 초래하게 된 한국의 식민지적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일성 장군님과 한국 민족민주전선의 향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1989년 12월 13일자 반제청년동맹 명의의 ‘주체기치’ 제2호

[예 3] 주체사상의 학습, 연구, 보급활동은 결코 억압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

사상은 우리 한국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고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참다운 민족자주 이념이라는 데 있다. 한국 민중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바를 따라 나아갈 때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

—— 1989년 12월 21일자 남도주체사상연구회 명의의 ‘파쇼정권의 주체사상 신봉자 대열에 대한 야수적 탄압만행을 규탄한다’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의율해 온 대학신문 또는 출판물의 내용은 극렬한 것 일색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민족해방을 주장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한민족의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날조하여 그들을 우상화하고 소위 주체사상을 선전·찬양하는 내용,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선전하거나 대남 흑색선전자료를 그대로 전파하는 내용, 사회구성을 착취·피착취의 관계로 인식하여 계급투쟁을 선동하며 노동자 또는 민중계급에 의한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혁명이론을 미



화·선전하거나 과거 좌익세력의 폭동을 민중혁명으로 치켜 세우는 내용 등이다.

이와 같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이적출판물이나 각종 불순유인물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같은 이적출판물과 불순유인물들은 한결같이 국내 좌익세력에게 투쟁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또 좌익세력의 활동을 선전하는 한편, 노동운동이나 순수한 집회·시위를 정치투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도면밀한 논조를 펴고 있다.

실지로 소위 운동권 핵심 간부들이나 노동현장의 제3자 개입사범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종류의 이념서적이나 유인물을 통해 의식화 학습을 받은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적출판물과 불순유인물의 범람은 매우 걱정스런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상오염을 통한 국론분열과 국력약화를 노리는 북한 및 국내 좌익세력의 이같은 책동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 나왔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름계 한 자나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반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제6공화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로 의율, 처벌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예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유형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 예술·창작

수사당국은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그림을 슬라이드화하여 북한에 송부한 홍성담씨를 구속기소하였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미술운동의 탄압으로 매도, 이는 헌법상의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홍씨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고 나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가를 즉각 알아차릴 수 있다.

홍씨는 수사결과 재독 북한공작원으로 판명된 성낙영에



‘민족해방운동사’ 11쪽 중 10번째 그림인 ‘조국통일운동’—민중이 연대하여 반미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전개, 좌취·억압·외세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내용이다

게 일찍이 포섭된 인물이었다. 그는 성낙영으로부터 독일화 2,000마르크, 미화 1,500달러를 받아 가지고 1988년 6월 28일 국내에 들어와 수시로 성낙영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하고 국내 운동권 동향 및 정세를 분석한 서적을 우송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는 1989년 4월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민미연) 건설준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여순반란사건 등을 민족해방투쟁으로 왜곡·미화하는 내용의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

운동사' 11쪽을 완성하였다. 그는 소위 평양집회 참가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킬 목적으로 이 그림을 서울대 등 각 대학에 순회·관람시키고 그 직후인 6월 초순 이를 슬라이드 사진으로 제작하여 평양에 보냈다.

한편, 북한에서는 평양방송을 통해 이 그림을 '반봉건 투쟁이나 반미·반파쇼 투쟁의 시작에서 형상화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홍씨 등의 행위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 같은 심정을 반영한 것이고 분열의 장벽을 없애고 남조선 통일을 앞당기려는 애국적 행동'이라고 친양하였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 그림을 평양, 원산, 함흥, 개성 등 북한 전 지역에 순회 전시하였다.

이 사건은 북한이 해외 전위조직을 이용, 예술인들을 포섭한 후 국내로 잠입시켜 간첩활동을 하게 하거나 소위 공산혁명의 전위인 '문화선전대' 역할을 하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장편서사시 '붉은 산 검은 피'의 작가 오봉옥씨와 이를 실천문학지에 게재하고 단행본으로 발간, 배포한 실천문학사 전 대표 송기원씨를 구속하자 일부에서는 이 또한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소위 장편서사시 '붉은 산 검은 피'는 1930년대부터 1946년 10월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는 일제 치하와 미군정 치하에서 남한 사회가 일본에 이은 미국의 잔악한 착취와 탄압으로 극도의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였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남한을 지배·착취하는 미국을 타도하려는 적대감정과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장군은 축지법을 쓴다더라, 두 팔을 벌리고 이 산 저 산 날고 두 다리 벌리고 산에 걸터앉은 ○○○장군은 하늘에서 왔다더라' 하는 등의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이 시는 김일성의 소위 항일 빨치산 활동과 조국광복회 활동을 미화·찬양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을 강도높게 표현하는 한편 미국을 점령군으로, 소련을 해방군으로 묘사하여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이다.

그뿐 아니라 이 회사 전 대표 송씨는 북한원전 시집 '백두산' 6,000부를 제작, 배포하기도 하였다. '백두산'은 북

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인 조기천이 쓴 것으로, 김일성을 ‘절세의 영웅’으로 우상화하고 항일 빨치산의 활동을 날조·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북한 바로알기’라는 미명 아래 북한원전을 함부로 출간,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문학과 예술조차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따라야 하며 소위 혁명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북한 원전의 출판을 무한정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험요소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오씨나 송씨의 행위는 예술·창작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3. 국가보안법과 통일문제

가. 7·7 선언의 참뜻

정부는 1988년 6월 2일 북한이나 공산권 관계 자료의 개

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을 통칭 7·7 선언이라고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또 1989년 9월 11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혔다. 이 통일방안은 각계 각종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여기에서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민족공동체를 발전, 가속화시키는 ‘남북연합’의 중간 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사명이며, 정부도 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아무리 시급한 민족의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북한공산집단이 노리는 적화통일이거나 일부 민중혁명론자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내에 민중정부를 수립한 후의 연공·연북 통일이 아니다.

7·7 선언은 분명히 북한을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겠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이 대한민국을 적화혁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나 전술, 그리고 대남분열공작책동 등 반국가활동과 이에 동조하는 행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과 7·7 선언이 병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통일을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라는 이 중적 실체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나. 통일정책 추진의 주체

7·7 특별선언을 전후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통일론에 따라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여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실 국민이 통일문제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고 상반된 입장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바탕을 두고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 제66조에서 그 구체적 책무를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통일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자 책임에 속한다.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달성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교섭 상대인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전체주의적 일원주의 체제로 통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일정책 수행을 정부로 일원화 시키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대북 제의와 접촉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책임있는 통일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만을 자초할 것이 명백하다. 이는 곧 북한이 노리는 대남분열공작책동에 이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상 정부 자체의 대북접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의 대북접촉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전상태에 있는 국가간에도 휴전협상을 위해 각국 대표의 접촉이 허용되는 것처럼 정부가 정책적 결단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통로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자료를 개방하고 있으며,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을 주선하고 남북간 물자의 교역,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경제인·종교인의 방북 등 민간인의 대북교류협력을 지원하여 왔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부의 승인과 지도하에 민간인의 다방면적 교류협력과 북한방문을 적극 허용, 장려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남북접촉 주체의 일원화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고위급 예비회담, 국회회담 준비접촉,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체육회담 등 남북간의 교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법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기만 하면 남·북한간을 마음놓고 왕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남·북한 주민이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고, 남북간에 물품을 자유로이 반출·반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세·방위세·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도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간의 인적 교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순수한 남북교류협력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원활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통일문제와 관련,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지 않은 통일논의나 정부를 배제한 자의적 대북접촉 기도사건 등에 극히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운용에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통일정책의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다. 빗나간 통일론과 밀입북 사건

1988년 3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한 입후보자가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남북학생 체육대회 성사를 위한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한 이후 대학가 운동권의 소위 조국통일촉진투쟁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운동권에서는 이보다 훨씬 앞서부터 통일문제를 투쟁의 한 방편으로 삼아 왔다. 1986년 5월 30일자로 운동권에서 나온 '지금 시기 우리들의 전술적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유인물은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민주·통일의 가치 아래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화하고 대중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투쟁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투쟁영역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통일문제가 일찍이 운동권의 투쟁방편 가운데 하

나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또 1988년 6월 20일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뉴스위크’지 외의 회견에서 ‘6·25는 통일을 위한 것이었으며 통일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1988년 7월 14일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준비보고서는 ‘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8·15 학생회담은 반미·반독재 투쟁과 조국통일촉진투쟁을 결합하여 총화할 수 있는 힘있는 투쟁의 매개가 된다.……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8·15 남북학생회담을 전국을 뒤엎는 반미·반독재·조국 통일의 핵심으로 일떠 세우자’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운동권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과 선량한 학생들을 선동키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1988년 5월 19일자 노동신문에서 ‘남북학생회담 실현을 위해 4·19가 남긴 피의 교훈을 명심하고 억세게 싸우라’고 선동하였다. 이와 함께 6월 17일에는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전금철이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8·15 남북학생회담을 마련하며 올

림픽경기의 남북 공동주최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는데 대해 모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렇듯 북한은 운동권 학생들의 이른바 조국통일촉진투쟁을 부추겨 나왔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6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순수하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정부는 학생들이 제시한 국토종단 대행진과 체육대회 개최 문제를 수용, 7월 15일 문교부장관이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교육당국 회담까지 제의하였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자의적으로 판문점 진출을 기도, 큰 물의를 빚었다.

판문점 진출 기도가 무산되자, 운동권 학생들은 서울올림픽 개최가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반통일 세력의 음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그 후에는 평양축전 참가야말로 통일 구국의 길이라고 하면서 소위 평양축전참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밀입북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일련의 밀입북 사건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외국과의 선전포고, 개전, 휴전, 강화조약체결 등은 매우 복잡다기하고 미묘할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대표권을 가진 정부가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마땅하며, 개인적 판단이나 영웅심리에 의해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승인없는 자의적 대북접촉과 왕래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과 주권적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주권적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북한에 들어가거나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미국 국민과 외국정부와의 사적 교류 금지에 관한 미국의 로간법(The Logan Act)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독립전쟁 직후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로간이라는 목사가 미국과 전쟁 직전 상태에 있는 프랑스를 방문하

였다. 그는 미국은 싸울 의사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안되어 있으니 강화조약을 체결하겠다면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등 프랑스 혁명정부와 개인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귀국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그를 두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정부의 허가없이 미국과 분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외국정부나 관리 또는 그 대리인의 조치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국의 국가정책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외국정부나 관리 또는 그 대리인과 직접·간접으로 통신 또는 접촉을 개시하거나 계속한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로간법(미국법전 제18편 제953조)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최근 발생한 밀입북 사건에 대해 대단히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 문익환씨 밀입북 사건

수사 결과 문익환씨는 재일 북한공작원 정경모의 입북 계획에 따라 밀입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북한에 들어

가 통일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북남고위정치군사회담 개최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김일성이 평화주의자이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양 선전하는가 하면 북한은 남침의사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 정부를 외세의 지배를 받는 독재정권, 군사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중은 통일을 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분단지향적이며 통일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의 방해세력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마치 자신만이 통일을 염원하고 행동한 듯이 합리화하면서, 45년간 북한 주민을 억압 통제하고 심지어 부자 세습체제까지 굳혀놓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에 대하여는 단 한 마디의 충고나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전 국민에게 쓰디쓴 배신감만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 서경원 등 간첩사건

서경원씨는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5년 4월경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재독 북한공작원 성낙영의 안내로 북한공작원 정선생과 접선, 그로부터 김일성 면담주선과 농민투쟁 자금지원을 약속받는 한편 농민운동을 대정부투쟁으로 전환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입국했음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서씨는 그 당시부터 1989년 4월까지 사이에 성낙영으로부터 전후 8회에 걸쳐 공작금 34,300마르크를 송부받고, 1986년 4월에는 유고 베오그라드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다시 북한공작원을 만나 국내 농촌실태 및 문제점 등 국내정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1988년 8월 18일 밀입북하여 김일성 및 허담과 면담하면서 그들에게 국내정세를 보고하고, 허담으로부터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농민운동의 대중화, 재야운동권의 결속 등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공작금 반입과 연락루트로 활용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 50,000불을 수수한 후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귀국 후 원일레벨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위장업체로 운영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북한의 지령 사항 수행을 계속하는 한편, 비서관 방양균씨를 포섭, 같은 해 11월 29일 방씨를 서독 뒤스부르크에 보내 북한공작원에게 국내정세 분석보고서와 국내 운동권 단체에서 발간한 유인물 등을 제공토록 하고 공작금 12,000불을 받아 오게 하는 등 간첩활동을 자행하였다.

수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서씨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밀입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첩행위를 한 자의 통일론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

■ 임수경양 밀입북 사건

북한은 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소위 '반제연대성'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 청년학생들의 정치문화행사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에서 개최함을 기화로 이를 조선인민의 최대 경사라고 선전하였다.

그들은 이 행사와 관련, '남조선 청년학생 및 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과 반정부 투쟁을 고무시켜 적화통일의 지름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는 북한이 평양집회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 철저히 동원되었다. (사진은 1989. 7. 27 통일각 집회)

길을 마련하는 한편 북조선의 경제적 위력과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전대협을 대남 교섭창구로 선정하고 전대협 소속 학생들을 평양집회에 초청하였다.

임양은 이러한 북한의 목적을 잘 알면서도 전대협 핵심 인물인 박종열 등의 지시에 따라 재유럽 민족민주운동협의회 프랑크푸르트 조직책이자 북한 공작원인 이영준과 함께 밀입북, 북한의 대남적화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한

편 우리나라 대학가의 실태를 보고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임양은 북한에 머무는 동안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연설 등을 통해 ‘남한의 일반 국민들 가슴 속은 반공 교육과 반북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레드 캠플렉스가 있다. 남한 정권은 반통일 세력이며 진정 통일을 원하는 자는 좌경용공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이다. 미국과 ○○○ 일당은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미친 듯이 발광 한다. 남한은 군사·정치·경제적 자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녘 형제들의 어느 얼굴에도 대남적화야욕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임양은 또 북한 노동당 간부인 조선학생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른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에 합의 서명하였다.

이와 함께 임양은 북한이 국제적인 반한·반미 분위기 조성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개최한 소위 ‘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하여 미군 철수, 휴전협정 철폐 등 북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다. 그뿐 아

니라 임양은 북한이 소위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평양집회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 철저히 동원되었다.

임양을 대동하기 위하여 밀입북한 천주교 신부 문규현 씨도 ‘판문점을 통한 임수경 귀환’이라는 북한의 대남 선전 공작에 동조,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몰아세우고 현 정권을 민족의 적으로 매도하는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하였다.

결국 대학가 운동권의 이른바 조국통일촉진투쟁과 그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밀입북 사건들은 우리 사회 내부를 교란시켜 적화통일전략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입지만 강화시켜 주었다. 그 반면, 진정한 평화통일 염원에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성의 뒷받침이 없는 행동지상주의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감상적 통일지상주의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명백히 배치된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과 주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통일문제와 관련한 사건도 실상은 통일을 빙

자한 반국가적 활동을 처벌한 것일 뿐이며,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4.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1988년 12월 13일 민주정의당이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을, 그리고 1989년 12월 4일 평화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민주질서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대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 최근 민주자유당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1990년 3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로써 국가보안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다가서게 되었다.

법은 본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되

어 있는 만큼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각별히 신중한 고려가 요망된다.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지난날의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1960년 민주당 정부는 집권 직후 구시대의 청산이라는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당시 논란이 많았던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의 정보수집죄(제12조), 소위 인심혹란죄(제17조 제5항), 헌법기관 명예훼손죄(제22조)를 삭제하였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당시 국회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변란목적단체 등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약속·협의·선동·선전한 자와 동 단체 등의 목적한 사항을 선전하기 위하여 문서·녹음반·도서 등 표현물을 제작·복사·반포한 자 등을 처벌하는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편의제공죄(제21조)까지 폐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공산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심지어 북한공작원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한 자들까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출소하

게 되었다.

이로 인해 좌익세력의 준동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당시의 자유방임적 분위기를 틈타 북한은 간첩과 공작원을 침투시켜 민심을 교란시켰다. 그들은 국내 좌익세력과 연계, 우리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각종 책동을 강화하였다.

그렇게 되자 민주당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편의제공죄와 함께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조장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찬양·고무죄를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1961년 3월 20일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끝내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반공을 국시로 내건 5·16 군사혁명의 한 명분을 마련해 주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우리 국가사회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다.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북한이나 국내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체제파괴 책동에 효율적

으로 대처할 수 없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정말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것이라 하겠다.

III

인권시비의 시작과 끝

1. 정치범과 양심수
2. 고문 · 가혹행위
3. 의문사
4. 소위 백색테러
5. 교정시설에서의 인권
6. 변호인 접견권
7. 인권시비 속에 묻혀버린
또 다른 인권

III. 인권시비의 시작과 끝

지금까지 우리는 제6공화국의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상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이름 아래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례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로 민주화를 추진해 나왔으며, 앞으로도 그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법질서 파괴사범이나 체제도전사범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와 관련, 정치범이나 양심수를 양산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통해 정부가 사건을 조작했다든지 사법처리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제6공화국에서의 인권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과장되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주장이 유

포되고 있음에 비추어 정부는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민주화 추진 의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 정치범과 양심수

가. 정치범

■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범 문제는 연혁적으로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문제와 관련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논의되어 왔다. 즉,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주한 범법자에 대해 두 나라 간에 범죄인 인도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자가 정치범인 경우 인도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만일 정치범을 인도하게 되면 인도된 범죄인이 정치적인 사유로 부당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범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학자에 따라 각양

각색이어서 완벽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기본적 정치질서나 체제를 파괴·변혁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지칭하고, 넓게는 일반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파시스트 및 테러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치범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정의가 어떠하든 범죄행위에 정치적 목적 또는 동기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외국에서 정치범을 일반 범죄인과 구별하여 논의해 온 것은 주로 정치범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둘 것인가, 징역형 대신 명예구금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지 않는가, 특히 사상범의 경우에 보안처분제도와 부정기형을 도입할 것인가, 공개된 재판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형상 어떠한 처우를 할 것인가라는 등의 관점에서 였다.

요컨대 정치범에 관한 문제는 이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거나 구속된 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법

에 의한 처벌을 전제로 법률상 어폐한 처우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논의의 촛점이 모아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소위 정치범 문제는 이러한 국제법상 또는 국내법상의 정치범 처우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들은 구시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범 문제를 구금된 자의 석방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속된 일부 범법자를 그들 임의로 정치범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며 이를 무조건 석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소위 정치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종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아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아직도 정부를 반민주적 독재정권으로 간주하여 민주화만 주장하면 심지어 폭력·파괴 행위를 한 자라도 석방되어야 할 소위 정치범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도 이런 주장은 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또는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깊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1988년 12월 21일 구시대 하에서 정부비판적 활동을 하다가 실정법위반으로 구금되거나 처벌 받은 자를 포함, 당시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구속자 전원을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석방, 사면·복권 조치함으로써 소위 정치범, 양심수, 시국사범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지은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제6공화국에서는 국회와 언론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민을 부당하게 구금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당연히 석방되어야 할 구속자로서의 소위 정치범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의미로 정치범을 파악하는 일부의 시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또 이제는 정치범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오해를 유발케 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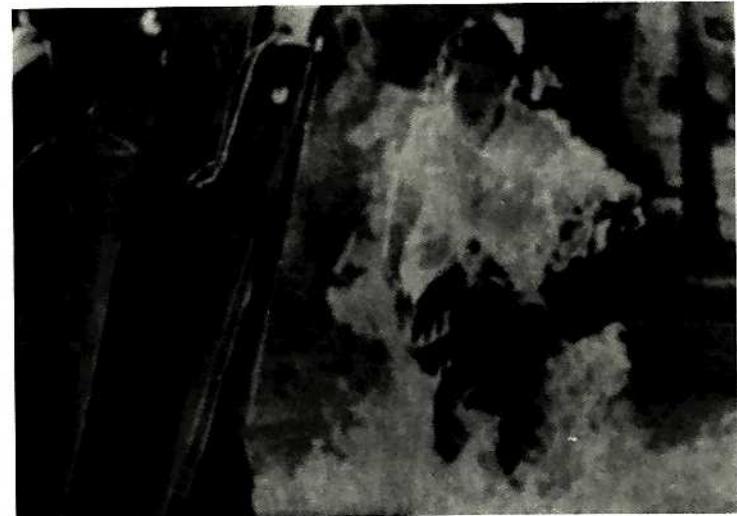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의 혼란이 대다수 국민들의 오해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범이란

이름만 붙여 주면 그 자가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해서는 안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거나, 정부가 아직도 정통성과 도덕성을 결여하여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정치범이 있는 양 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최근 일부에서는 정치범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무조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곧 소위 정치범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범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사회 일각에서 소위 정치범이므로 석방해야 한다는 범법자 중에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을 비롯, 돌멩이와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불법가두시위를 주도한 자, 공공기관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시설물을 파괴하며 방화까지 한 극렬행위자, 화염병과 신나로 경찰장비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경찰관을 상해하거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자, 학내분규시 총장실을 점거하고 시설을 파괴하거나 스승을 폭행한 반인륜적 파렴치행위자, 사업장 내의 중요 시설물을 파괴·방화하거나 동료 근로자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치범 속에는 화염병 투척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진은 1988. 5. 28 단국대학교 앞 시위현장)

혹은 사용자를 감금·폭행·협박하고 심지어는 동료 근로자를 사상케 한 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되었다고 하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예컨대 공공기관 기타 건물에 사제폭탄이나 화염병을 투척하고 신나로 방화하는 행위가 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이유에서 자행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이유로 가중스런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인류 공통의 적인 테러와 다

를 바가 없다.

그밖의 폭력행사자들도 화염병이나 사제폭탄을 투척·방화한 범법자에 버금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민주와 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고 오신한 나머지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하고 폭력적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소위 주사파 내지 교조적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거나 그 동조세력 또는 민주적인 법질서의식이 결여된 부화뇌동자들이다.

이들이 행사한 폭력의 양상이나 정도, 그 동기나 목적의 실상은 덮어둔 채, 단순히 정치적인 동기나 목적이 개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이라고 하면서 석방을 요구한다면 이는 자기모순도 이만저만한 것 이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을 그와 같이 석방하여야 할 소위 정치범이라고 하는 주장도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모두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한 반국가사범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의 체제파괴책동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 실정법을 무시한 채 우리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어느 공산주의 혁명가는 민주주의가 멸망하고 그 혁명이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혼란전술에 혼혹되어서는 안된다. 소위 정치범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과감히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나. 양심수

■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양심수 또는 양심범이라는 용어는 법과 양심이 충돌할 경우 어떠한 법적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학, 사회학, 철학적으로도 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제사면위원회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음에도 신념, 피부색, 성별, 인종적 기원, 언어, 종교를

이유로 구금된 자를 양심수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석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소위 양심수를 석방하고 주장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양심수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실정법에 저촉되어 구금된 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는 경우, 범죄행위의 태양과 관계없이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바에 따라 행동하였다면 심지어는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범죄인까지도 양심수에 포함될 위험성이 있다.

원래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의 양심범 문제는 양심에 근거한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될 경우 어떠한 법적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 서독의 형법학자이며 법철학자인 웨젤(H. Welzel)은 나찌시대의 전범자는 양심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확신 내지 광신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같은 논리를 개진하면서 법적 비난가능성의 유무가 논란될 수 있는 양심범의 예로 군복무에 대신하는 대역복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종교적 양심 때문에 산모를 살리기 위한 임신중절 수술을 거절한 가톨릭 신자인 의사, 기형아를 살해한 의사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이 양심범의 문제는 양심에 따른 행위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경우, 과연 범죄인에게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양심에 따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에 그 오인이 정당한 사유에 기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법적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양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행위자의 결단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국민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양심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간통했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법적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국민 일반의 도덕적 확신은 그 나라의 역사, 전통, 가치, 윤리, 관습, 문화, 풍토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가체제와 관련하여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질서가 국민 총의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있는 한 그 기본질서에 반하는 특정 개인의 자의적인 양심적 결단은 사실상 국민적 양심 또는 국민 일반의 도덕적 확신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심수 또는 양심범의 문제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 개념이 잘못 사용될 경우, 어떠한 범법행위라도 범법자의 양심적 결단에 의한 것이기만 하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거나 석방해야 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 소위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하는가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양심수이고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으므로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특정 개인의 양심적 결단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상 결코 법적 제재를 면할 수 있는 양심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총의를 무시한 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범법자는 이미 양심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공안사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위 양심수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석방되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김없이 이들 공안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자의 반국가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공통되는 국민적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 폭력혁명노선을 추종,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유인물과 출판물을 통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외면상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의·주장이 폭력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상 폭력을 옹호

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정의한 양심수의 범주에서조차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체제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실정법상 엄연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통된 가치관이 허용하지 않는 반국민적 행위이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양심' 이란 단이요 허구일 뿐인 것이다.

밀입북 행위도 예외는 아니다. 자의적인 대북접촉과 왕래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과 주권적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또한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되는 정부의 통일노력을 부정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에 동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 일반 국민의 공통된 의사와 가치관에 반하므로 밀입북 행위 자체는 설령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양심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문익환씨나 임수경양이 개인적으로 북한 당국과 통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밀입북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대북접촉이 결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혼란만 일으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더욱이 밀입북 행위 이

외에도 간첩행위까지 해 오다가 발각되어 구속 기소된 서경원씨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쟁 중에 있는 적국이나 분쟁 중에 있는 외국에 대하여 미국 국민이 정부의 허가없이 교섭하거나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간법은 바로 국민적 양심을 위배하고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주권적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대북접촉 및 밀입북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국제사면위원회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소위 양심수 중에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옹호한 것이 명백한 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그동안 일부에서 양심수로 지목, 석방을 촉구해 왔던 김남주는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그는 1978년 9월에서 10월 사이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결성된 소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및 한국민주투쟁국민연맹(민투)에 가입한 다음, 무장폭동

에 의한 정부전복과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반국가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특히 활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해 12월 5일 신항식 등 5명과 함께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구모씨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 가족을 위협하여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는 강도죄까지 저질렀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간첩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장기복역 중인 사람들 가운데 용공조작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양심수가 상당수 있다면서 이들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폐기도 한다. 그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장기수들이 가혹행위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정식재판에 있어 자백이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그것을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 수사기관이 가혹행위에 의해 자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만일 하급심이 잘

못 판단한 경우라도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 이를 시정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어 그들이 처벌받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우리의 사법부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불신 내지 부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일부에서는 변호인 선임도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따라서 간첩 등 장기수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므로 변호인 선임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변호인이 항상 관여하므로 상당한 이유없이 공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수감중인 장기수는 대부분 남파간첩 혹은 월북하여 밀봉교육까지 받은 간첩과 그 관련자들로서 죄질이 중하다. 그들이나 그 가족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변명만을 진실인 것처럼 오신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장기복역수를 놓고 양심수 운운하며 석방해야 한다고 주